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취업 지원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6. 25.

###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종료처분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, 제12조제5항, 제29조제1항9호,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전0슬	03.06.23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○ 수급자격 인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락 두절	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100 2601동 1101호

- 공고기간: 2024.6.25. ~ 2024.7.9. (15일간)
-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시흥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기경(Tel. 031-496-195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